

중등용



실패해도 괜찮아!

학생 시민을 위한 학생자치 안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실패해도 괜찮아!

학생 시민을 위한 학생자치 안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 안내서

1. 학교를 만드는 즐거운 상상	06
- 학생자치와 학생자치활동의 의미	
- 학생자치활동과 사회참여활동	
2. 우리를 대표하는 학생자치회(기구)	10
- 학생자치회(기구)의 종류	
- 학교의 학생자치회(기구)와 자치활동	
- 교육청의 학생자치회(기구)와 자치활동	
3.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교육청과 학교	15
-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 구체적인 지원 내용	
4. 학생자치의 기본, 민주적 회의	17
- 회의의 기본원칙과 과정	
- 민주적 회의의 방법	
- 대의원회를 통한 학교 정책결정 참여	
5. 학교 안과 밖의 학생자치활동	23
- 좁은 의미의 학생자치활동	
- 넓은 의미의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규정(예시)	36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예시)	46

학생자치 안내서

1. 학교를 만드는 즐거운 상상

2. 우리를 대표하는 학생자치회(기구)

3.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교육청과 학교

4. 학생자치의 기본, 민주적 회의

5. 학교 안과 밖의 학생자치활동

학교를 만드는 즐거운 상상

학생자치와 학생자치활동의 의미

● 학생자치가 뭐지?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기결정권 : 각 개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책임감 : 자기가 결정하고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 학생자치활동은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준비(계획수립) → 진행(집행) → 마무리(평가)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자치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학생자치활동은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당연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감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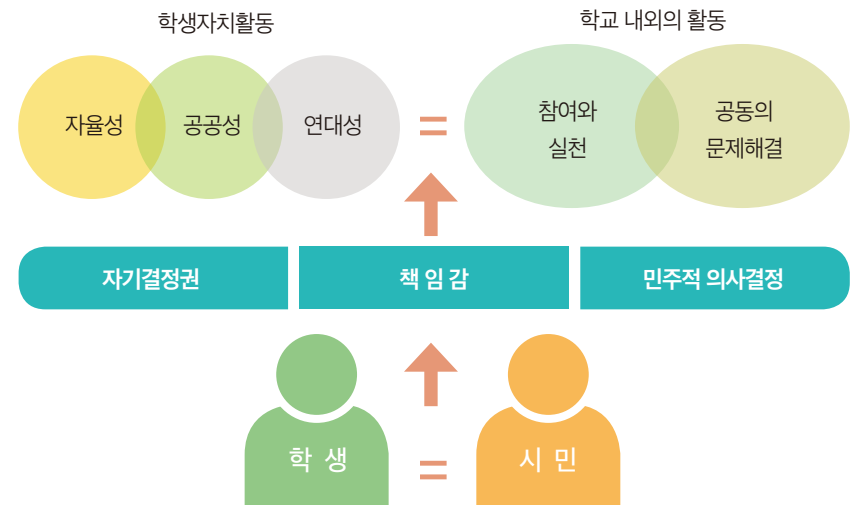
● 학생자치 왜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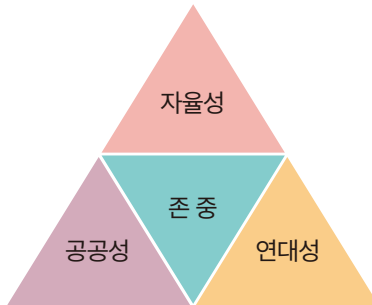
- 학교는 나, 너,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고
가정과 사회의 가운데 있는 곳으로
연습하고 실패해도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사회(마을)참여 활동 등을 통해
민주시민성인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자율성| 나와 우리는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갖는다.
- |공공성| 나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선택한다.
- |연대성| 나와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행동한다.

<학생자치>

민 주 시 민





- 나, 너,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 자신의 자율성만 주장하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공공성과 연대성만 주장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학생자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나, 너,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생자치활동과 사회참여활동

● 학교와 마을에서 하는 학생자치활동, 사회참여활동!

-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원인) 찾기
- 관련한 기존 방법이나 제도 찾기
-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계획) 짜기 및 실천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모형)

○○초등학교 학생들은 큰 사거리를 지나 등교를 한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가 복잡해 길을 건너려면 학생들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 문제가 대의원회의 시간에 안건으로 올라왔고 문제해결을 위해 서명 운동을 하기로 했다. 마침 동네 주민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학교 큰잔치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대의원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서명지를 담당 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대의원은 “학교 밖 문제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해 주변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Q. 나에게 마일은?

우리는 마을에서 놀고, 먹고, 모이고, 협동하고, 말하고, 예술하고, 교육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우리만의 색깔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의 다른 삶을 존중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사회참여활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동을 사회참여라고 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은 이런 사회참여를 통해, 나와 이웃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문화 축제를 진행한 북부지역 논스톱 활동



통학로 설치 위한 강화중 학생사회참여 활동

우리를 대표하는 학생자치회(기구)

학생자치회(기구)의 종류

학생자치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모임입니다.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제안한 공동의 문제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학생자치회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임과 교육청과 함께 활동하는 모임으로 이루어 집니다.

< 학생자치회(기구) >

학교			교육청
학급회	학년회	학생회	교육청 활동
학급회의하기	학년회의하기	전교학생회의 하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자치네트워크 운영
학급규칙정하기	학년규칙정하기	전교대의원회 운영 학교행사 계획 세우기 및 진행·평가	중·고학생자치대의원회 운영
학급 행사 계획 세우기	학년 행사 계획 세우기	학사일정계획 세우기 참여 교복디자인 선정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운영
학급운영비 사용계획 세우기	학년운영비 사용계획 세우기	생활규정개정 제안 학교급식관련 참여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대화
학급 현장체험학습 계획 세우기	학년 수학여행 계획 세우기	학생 동아리 운영	

학교의 학생자치회(기구)와 자치활동

● 학급회

- 학급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자치의 기초 모임
- 학급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급회의(다모임)를 통해 학급의 문제를 해결
- 학급회장 및 부회장, 각 부장(교칙에 따라 각 부서를 정할 수 있음)으로 구성

예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운영하는 학급마을



만수초 마을로 운영하는 스스로 학급 운영



부평서초 1학년 100일 학급 잔치

● 학년회

- '학급회'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 자치의 중간 모임
- 학년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년회의(다모임)를 통해 학년의 문제를 해결
- 학년회장 및 부회장, 각 학급회장(교칙에 따라 각 부서를 정할 수 있음)으로 구성

예시) 학생과 학년 선생님이 함께 운영하는 학년활동



서흥초 6학년 다모임



부개교 1학년 스스로 학년 운영

● 학생회

- 학생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전체 학생 대표로 학생자치의 핵심
- 전체 학생을 위한 공동의 문제 해결
- 전교학생회장 및 부회장, 각 부장(교칙에 따라 각 부서를 정할 수 있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예시) 점심시간 수요 음악회, 세월호 추모 행사, 마을연계 활동 등



부원중 학생회 세월호 추모 행사



선학중 점심 수요음악회 중 학생회 활동

● 학생대의원회

- 전교 학생을 위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
- 학급회, 학년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의견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
- 학급회, 학년회, 학생회(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 구성



선학중 대의원회



도림초 대의원회 스승의 날 축하 등교맞이

● 학생 동아리

- 동아리는 순우리말로 같은 목적으로 모인 모임
-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이나 방과 후에 모여 관심에 따라 주제별 활동
- 자율동아리는 방과 후에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자유롭게 구성

예시) 교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서흥초 돼지돌봄 동아리 '똥아리' 활동



산곡여중 '우리말 사랑동아리' 마을활동

교육청의 학생자치회(기구)와 자치활동

● 지역별 초·중·고 학생자치네트워크

- 학교의 학생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교육청 단위 학생자치기구
- 지역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학생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
-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부를 조직(교육지원청에 따라 구성)

예시) 지역단위 학생자치네트워크(지역 학생회) 참여하기



동부지역 중학교 학생회연합 활동(동학)



인천지역 고등학교 학생자치네트워크 활동

● 중·고 학생자치대의원회

- 중·고 학생자치대의원 70명과 비임원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
- 중·고 학생을 대표하여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 청소년 정책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학생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

예시) 청소년 정책 100인토론회 운영



교육감과 대화하며 정책을 제안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는 토론회

03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 학생들이 상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 학생자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고,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내용
 - (1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6호) 정규학습기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10호) 학교급식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 64조(학교발전기금)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

- 수업 시간 중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인 학급회의·학생회의 시간을 보장합니다. (학급회가 구성된 학급은 월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 학급회, 학년회, 학생회의 임원들이 모여 정기적인 대의원회를 통해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기별 2회 이상)
-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의 업무는 생활지도(안전) 업무와 분리하여 맡습니다.
- 학생회실은 학생회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규칙을 정합니다.
- 학생회실은 컴퓨터, 프린터, 회의용품, 게시판, 냉장고, 간식 등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에 학생회장 공약이행비로 3월에 200만원씩 지원)
※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학생들 여론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
-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학급자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2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
- 학교 안의 여러 위원회에 학생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칙제·개정위원회, 교육 3주체 회의 등)
-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합니다.
(학급교식 메뉴, 동아리부서 개설 운영,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조정, 현장체험 학습 장소 선정,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복 디자인·선정, 학생 편의시설 확충,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매점 운영 등)

04

학생자치의 기본, ‘민주적 회의’

회의의 기본원칙과 과정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일들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하고 결정하나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것을 ‘민주적 회의’라고 합니다.

● 회의 전에 이것만은 지켜요!

- ▶ 말(발언)을 할 때는 손을 들고 말합니다.
- ▶ 다른 친구가 말을 할 때, 끝까지 듣고 이야기합니다.
- ▶ 다른 친구의 말을 비웃거나, 비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 회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회의진행자는 안전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학생이 맡아 운영)

- ▶ 주제선정 : 회의할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
(회의진행자 : 방향의 안내자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안내)
- ▶ 의사결정 :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단계
(회의진행자 :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견을 반영)
- ▶ 실천활동 : 학생자치의 꽃으로 참여와 활동하는 단계
(회의진행자 : 일을 나누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 ▶ 평가(피드백) : 활동 결과를 되돌아보고 축하, 감사, 격려하는 단계
(회의진행자 : 대화를 통해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



민주적 회의의 방법

● ‘ㄷ’자 회의 방법(찬반회의)

하나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둘로 나뉠 때, 일정한 규칙 하에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회의 방법입니다.

예시) 학교 엘리베이터를 학생이 사용해도 될까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순서	내용
회의 전 활동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회의 규칙 설명
주장하기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발표하기
1차 반론	질문 없이 상대방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오류 찾고 말하기
2차 반론	주장하기와 1차 반론에서 발견된 상대방의 부족한 근거에 대해 다시 말하기, 준비한 자료 제시 가능
최종 반론	반론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주장의 흐름을 유지하며 발표



‘ㄷ’자로 하는 학급회의



‘ㄷ’자로 하는 찬반토론

● ‘ㄱ’자 회의 방법(모듬회의)

체육대회나 체험학습 계획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회의 방법입니다.

예시) 학교축제는 어떤 주제로 프로그램을 짤까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순서	내용
안건보고	함께 회의하고 싶은 안건을 미리 받아 회의진행자가 회의를 시작할 때 발표
안건선택	발표된 안건 중 함께 회의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택
선택된 안건 회의	선택된 안건의 제안자가 안건제시 이유를 설명 질문 및 대답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 나눔
회의 결과 표결	안건에 대한 해결 방법과 결정 사항을 투표로 정함



‘ㄱ’자로 하는 학급규칙 정하기



‘ㄱ’자로 하는 토론

※ 학급회의 운영 사례는 붙임1 참조(p.26)

● ‘ㅇ’자 회의 방법(동그라미회의)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순서에 맞게 돌아가며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회의 방법입니다.

예시) 우리 학급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어디로 갈까요?

순서	내용
진행자의 모두 발언	진행자의 간단한 자기 소개 및 회의 규칙 설명
안건 제시	안건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장소와 그 이유를 발표 - 우리 학급 현장체험학습은 어디로 갈까요? - 그 장소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시된 의견들의 장점 말하기	각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 - 각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투표하기	모두가 투표해서 한두 가지 의견으로 좁히기
반대자 수용하기	자신의 안건이 투표에서 떨어진 경우 반영하기 원하는 것 말하기 - 이 안건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학급 현장체험학습에 이것만은 꼭 이뤄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최종 의사결정	모든 의견들을 포함한 수정 안건으로 결정하기 -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포함하면 현장체험학습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마무리 발언	참가자 전원의 간단한 소감 발표



‘ㅇ’자로 하는 학급회의

※ 학급회의의 운영 사례는 붙임2 참조(p.30)

대의원회를 통한 학교 정책결정 참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학급에서 풀기 어렵거나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생활규칙이나 학교급식 메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의견이 있을 경우 학생대의원회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전에 이렇게 해요.

- ▶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된 안건 중 회의주제를 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안건,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안건, 교장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안건, 교육청이나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안건 구분하기)
- ▶ 대의원은 학급회의나 학년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참여합니다.

●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해 봅시다.

순서	내용
문제 확인	학생들의 문제 제기 및 확인
제안	학급회의 시간에 안건 제안, 학생자치부서에 직접 제안
협의	대의원회,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한 협의와 결정
간담회 개최	학교장과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등에 회의 결과 제안
학교장 승인	발의된 내용에 대한 학교장 승인
공고	학급게시판,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확정안 공고
실천	결정된 내용 실천
평가	실천내용 평가



도림초 대의원회 추석맞이 행사



신현고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대토론회

※ 대의원회의의 운영 사례는 붙임1 참조(p.29)

● 예시자료 : 정책 제안서 양식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제안자 :)

정책(행사)명	학생 공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설치
목적	☒ 자율성 ☒ 공공성 ☐ 연대성
	- 학생들의 과제 제출이 편리 - 선생님께 요청하지 않아 선생님 부담 감소
참가대상 및 인원	☐ 개인 ☐ 학급 ☐ 학년 ☒ 학교 ☐ 교육청
	인원 () 명
내용 및 계획	•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원인) 찾기 - 과제 제출 시 출력물 제출로 인한 불편 • 관련한 기존 방법이나 제도 찾기 - ○○ 학교 프린터기 운영(유료) •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 학생자치실에 공유 프린터기 설치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계획) 짜기 및 실천 - 컴퓨터, 프린터기 설치 - 프린터는 유지보지를 위해 렌탈 운영 - 유료와 무료는 학생들 설문으로 운영 - 학생회와 학년회가 함께 운영 • 평가 - 평가 후 운영방법 개선
예산	☒ 학생회장 공약이행비(교육청) ☐ 학교예산
	예산(안) - 컴퓨터 설치비 : 600,000원*1대 = 600,000원 - 프린터 운영비 : 50,000원*10월 = 500,000원
기대효과	- 학생회 운영으로 자율성 및 공공성 높이기 - 학생과 선생님들의 불편 감소로 학교 만족도 증가

05

학교 안과 밖의 학생자치활동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 루이스 라모르

- ▶ 나와 우리의 일을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교육청, 학교, 선생님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좁은 의미의 학생자치활동>

학교 학생자치회 활동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학급회	학년회	학생회	학생동아리	교육청 활동
학급회 중심의 활동	학년회 중심의 활동	학생회, 대의원회 중심의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네트워크 활동

<넓은 의미의 학생자치활동>

구분	교과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 안 활동	프로젝트수업 수업규칙정하기	학생자치회활동	(자율)동아리활동 스포츠클럽활동	학교 안 봉사활동	진로 교육
학교 밖 (사회참여)활동	마을교육공동체 연계수업	학생자치 네트워크 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 밖 봉사활동	직업 체험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학습에서의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학생 주도의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학급규칙 만들기



선배가 읽어주는 동화



함께 만드는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인천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동아리 발표

● 예시자료 : 행사 계획서 양식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제안자 :)

행사명	세월호 추모 행사
목적	☒ 자율성 ☒ 공공성 ☐ 연대성 - 생명존중, 안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참가대상 및 인원	☐ 개인 ☐ 학급 ☐ 학년 ☒ 학교 ☐ 교육청 인원 (100)명
내용 및 계획	• 행사 내용 - 행사 일시 : 2020.04.16. - 행사 장소 : 교문 앞 - 행사 내용 : 등교맞이, 플래시몹 • 행사 역할 분담 - 기획 : 학생회 총무부장 - 홍보 : 학생회 정보부장 - 예산 : 학생회 부회장 - 평가 : 학생회 부회장 - 진행 : 학생회장 • 행사 계획 - 아침 등교맞이 시 리본, 배지 나눠주기 - 1교시 끝나고 운동장에서 플래시몹
예산	☒ 학생회장 공약이행비(교육청) ☐ 학교자체예산
	예산(안) - 배지 및 리본 : 1,000원*400개 = 400,000원 - 행사운영비 : 100,000원*1회= 100,000원 - 간식비 : 3,000원*20명=60,000원
기대효과	- 안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 확산

[붙임 1] 학급회의(모둠회의)

* 학급회의는 회장이 진행함. 부회장은 서기의 역할을 함.

* 준비물 - 안건지(모둠별 한 장, 진행자 한 장), 셀로판테이프 또는 자석

1. 개회 선언 : “지금부터 제 ○ 차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

2. 자리 정돈 : “모둠별로 토의가 가능하도록 책상을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둠별로 책상을 옮기도록 한다.

3. 심의 사항

가. 제안 설명 : 배부된 안건지를 모둠별로 나누어 주고, “제 ○ 차 학급회의 의제로 첫 번째,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한 후 각 모둠의 대표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후문 개방에 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후문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과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둠별 토의 :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에 대한 모둠 활동이 있겠습니다. 모둠 토의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나누어드린 A4 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세요.(모둠별 논의-모둠 상황을 보면서 진행함)

다. 모둠별 발표 및 확정 : 첫 번째 안건에 대한 모둠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1모둠 대표 나와주세요.(모둠별로 발표한 A4 용지는 칠판에 부착). (모둠별 발표가 끝나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해 각 모둠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의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그 모둠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우리 반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 한 가지를 확정하겠습니다.(토의나 다수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우리 반의 대표의견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반 의견으로 ○○○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학생들 “네”)

[두 번째 안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4. 협의 사항 : 학급회의를 통해 나온 협의사항을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학교에 전달하여 함께 개선되도록 실천한다.

5. 회의록 낭독 : 서기(부회장)는 안건지에 회의 결과를 기록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보고하고 이상 여부를 묻는다.

6. 담임선생님 말씀 :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평소 학생들의 자치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 조언과 회의 진행상의 태도나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7. 폐회 선언 : “이상으로 제 ○ 차 학급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급회의(모둠회의)

1. 등하교 복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세요.

예) 교복만 입고 다니자. 여름에는 사복을 허용하자. 교복을 없애자.

- 모두가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한다.

- 칠판에 발언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고, 발언자의 이름을 써 준다.

교복만 입고 다니자 - 영석
여름에는 사복을 허용하자 - 일석
교복을 없애자 - 이석
귀걸이의 개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삼석

- 마무리하면 추가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1-1.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 오른쪽 네 가지 기준을 칠판에 적어주고,

그 기준에 맞추어 질문이나 의견을 말하게 한다.

- 질문이나 의견을 말하면, 해당 발언자가 답변한다.

- 더 이상의 발언이 없으면 마무리한다.

합리적인가?
존중하는 방식인가?
관련성이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1-2. 한 항목씩 거수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한다.

-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 반대하면 ×로 표시한다.

× 교복만 입고 다니자 - 영석
○ 여름에는 사복을 허용하자 - 일석
× 교복을 없애자 - 이석
○ 귀걸이의 개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삼석

1-3. 별지에 정리한다.

2. 두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세요.

예) 염색은 갈색 계열만 허용하자. 5만원 이하의 염색만 허용하자. 완전 자율로 하자.

- 磯과 같음.

2-1.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2-2. 한 항목씩 거수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한다.

2-3. 별지에 정리한다.

3. 화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세요.

1-1. 기준 제시

예) 색조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티트는 금지한다. 아이섀도우는 허용한다.
- 磯와 같음.

3-1.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3-2. 한 항목씩 거수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한다.

3-3. 별지에 정리한다.

1-1. 기준 제시

※ 별지 - 과반수 이상 찬성한 내용은 모두 적어주세요.

복장	
두발	
화장	
건의	

대의원회

안전 받기	대의원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안전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올립니다. 올라온 안전 : 강당 이용, 실내화 빌려주기, 한글날 행사, 탁구대 이용
개회 선언	지금부터 제 ○회 대의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발표	이번 회의에 올라온 안전은 강당이용, 실내화 빌려주기, 한글날 행사, 탁구대 이용입니다. 안전을 올려주신 대의원은 안전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발의자1	우리 학교는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강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당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강당사용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발의자2	얼마 전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아 실내화 없이 교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에 가서 양말이 더러워져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깜빡 잊고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실내화를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안전 발의자3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발의자4	5층 복도에는 탁구대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탁구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평한 탁구대 사용문제를 의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채택	안전을 발표해 주신 대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 할 안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의견을 확인한 결과 강당 이용, 실내화 빌려주기, 한글날 행사가 채택되었습니다. 탁구대 이용문제를 발의해 주신 대의원은 문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여 다음번 회의 때 안전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토의	지금부터 올라온 안전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1 토의	한꺼번에 강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 1에 대해 의견 있으신 대의원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학년별로 요일을 정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학생 2-6개 학년이 모든 요일에 사용하기는 어려우니 2개 학년씩 묶어서 요일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들은 3개 학년씩 묶어 사용합니다. 학생 3-강당이 5층에 있고 강당을 주로 사용하는 학년이 6학년이므로 6학년이 중간놀이 때는 모두 사용하고 점심시간을 5개 학년이 돌아가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안전 1 투표	강당 이용에 대해 3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3가지 의견을 놓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학생 2의 의견이 12표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강당사용은 2개 학년씩 요일을 정해 사용하겠습니다.
회의록 낭독	오늘 3가지 안전에 대한 토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회 선언	이상으로 ○회 정기 대의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두 번째, 세 번째 안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붙임 2] '오' 학급회의(동그라미회의)

1단계	원 만들기 - 필요성 나누기 - 이야기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형태이다. - 뒤의 학생과 서로 얼굴이 안 보이고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한다. - 빠르고(1분), 조용하고, 안전하게 : “원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앉습니다.”
2단계	감사 나누기 - 회의는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며 서로 감사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진다. -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간이다. - 원을 만들기 전에 미리 잠깐 동안 회의 구성원(교사 포함)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을 생각할 시간을 준다.
3단계	회의 역할 정하기 - 모든 사항에 민주적 의논보다는 어느 정도는 진행자의 권한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 사회자, 평화 지킴이(평화가 깨졌습니다), 시간 지킴이(손들기), 소음 측정기(손들기), 기록이 등
4단계	안전 정하기 - 지난 회의 평가하기 :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잘 실천되었는지 평가하며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시 의제로 설정하거나 지난 의제는 확인만 하고 이번 의제로 넘어간다. - 안전 : 사람 vs 행동 - ‘~가 괴롭혔어요. ~가 때렸어요.’가 아닌 ‘불편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즉, 비난보다는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문제를 이야기 한다. 안전은 미리 받는다.
5단계	역할 놀이 - 실제 있었던 일을 배우를 뽑아 연극처럼 한다. - 과장하기, 즐기, 짧게 이야기하기 - 실제 있었던 인물은 다루지 않기 - 안전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6단계	해결책 브레인스토밍 - 예방책 vs 해결책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해결책 결정 : 하나만 고르기보다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게 하기’ 후 정한다. - 연관성이 있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존중의 방식인 것, 실현 가능한 것 vs 상처 주는 것을 살펴보고 결정 후 실현 불가능한 해결책은 제외한다. 결정된 해결책이 많으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처음부터 다수결로 정하지 않음)
7단계	소감 나누기 해결책 평가 방법 : 해결책 밑에 ~월 ~일까지 실천하고 평가하기 → 낙관적인 삶의 태도. 평가일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나요? 안 되었을 경우 더 좋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이 해결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반이 좋아진 점이 있나요?”

※ 출처 : PD-KOREA 양평 강하초 김성환 선생님 사례

[붙임 3] 지역별 학생자치네트워크 운영 사례

동부지역 중학교학생자치네트워크 운영

■ 운영계획

일시	내용	비고
<1차> 3.28.(수)	안내 - 동부학생회연합 활동 안내 강의 - 학생 자치활동의 필요성 워크숍 - ○○중 학생자치활동 운영 사례 발표	강의 (1시간)
<2차> 5.9.(수)	워크숍 - 자기 학교 학생자치활동 연간계획 발표 토론 - 학교별 학생자치활동 연간계획 공유 안내 - 원탁토론 진행 안내	워크숍 (1시간) 토론 (2시간)
<3차> 6.20.(수)	워크숍 - 학교별 학생들이 주관한 학교행사 운영사례 발표 토론 -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행사 성공 방안	워크숍 (1시간) 토론 (2시간)
<4차> 8.29.(수)	워크숍 - 학교별 학생들이 주관한 학교행사 운영사례 발표 토론 -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행사 성공 방안	워크숍 (1시간) 토론 (2시간)
<5차> 10.10.(수)	워크숍 - 학교별 학교생활규칙 발표 토론 -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방안	워크숍 (1시간) 토론 (2시간)

<2차>회의 식순

동부 학생회 연합(동학)

- 5월 9일, 16시
- 선학중학교

- 개회사 - 학교장
- (모듬별) 참석자 인사
- 학생회 연간 계획 사례 발표
- 학생회 사업 세부계획 작성
 - 1) 브레인 스토밍(포스트 잇)
 - 2) 사업 정하기
 - 3) 세부 계획서 짜기
- 학교로 돌아가서 실행하기

<3차> 회의 식순

동부 학생회 연합(동학)

- 6월 20일, 16시
- 선학중학교

- 개회사 - 학교장
- 근황 토크
 - 학생회, 일상 모습
 - 학생회 사업(행사) 모습
- 주제 토크
 - 의제 수합(자유롭게) → 논의
- 학생회 사업 세부계획 작성
 - 1) 학기말 고려한 사업 제안
 - 2) 사업 정하기
 - 3) 세부 계획서 짜기
- 기타 - 리더십 캠프 해 볼래요?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규정(예시)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예시)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 8조 (학교 규칙)

-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회 구성 예시

구분	구성	역할
학생총회	전체 학생이 모이는 최고 심의·의결 기구	•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기타 학생생활 관련 중대한 토의 사항 등
대의원회	학급대표, 운영위원회 임원, 동아리연합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	• 학생회 운영 계획 심의 •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안 발의 • 학생총회 소집 •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 건의 사항 심의 등
운영위원회	학생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구	•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 대의원회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등
학급회	학급 정·부회장, 부장으로 구성된 학급자치 관련 심의·의결 기구	• 학급 운영 계획안 수립 • 대의원회 안건 및 건의사항 상정 등 • 정·부회장, 각 부장 불신임 결의
학년회	학년 정·부회장으로 구성된 학년자치 관련 심의·의결 기구	• 학년 운영 계획안 수립 • 대의원회 안건 및 건의사항 상정 등 • 정·부회장, 각 부장 불신임 결의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고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본교의 교육목표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 생 회

제4조(명칭) 본회는 '○○○○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 사항)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활동
5. 학생 ombuds맨¹⁾ 활동
6. 학생 토론회 및 공청회 운영
7.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9조(의결) 본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10조(기구)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학년회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치 자문위원회를 두며, 학생자치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 장 학생총회

제11조(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2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13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ombudsman(옴부즈맨)제도는 본래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행정 감찰제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처리하는 제도이다. 학생 ombuds맨이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학생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15조(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3.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7. 학생 총회 소집
8.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0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21조(자격상실) ① 본회 대의원은 징계 처분(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있어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 절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제22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관련 회의 소집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
 4.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 주도 활동
 5.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집행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결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제 29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3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5조(자격상실) ①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징계 처분(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있어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제 2 절 운영위원회 활동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회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팀 운영
6. 학생옴부즈맨제도 운영
7. 학생토론회 및 공청회 운영
8. 기타 중요한 사항 집행
9.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치 자문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의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학생자치 자문위원회의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역할은 각 호와 같다. 단, 부서명 및 역할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총무부 :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문화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생활부 : 교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옴부즈맨부 : 학교 생활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 불편·불만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

제 3 절 학 급 회

제30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1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을 ○명으로 학급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제32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② 학급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9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학급회의를 통해 부서의 명칭 및 역할은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각 학년 반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① 후보자격

1. 학급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며 통솔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징계 처분(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있어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학생
 3.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 ② 후보자 추천 : 후보자는 5명 이상의 학생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선거 및 당선 : 담임교사의 입장 하에 무기명 투표로 한다. 회장을 먼저 선거하고(과반수 이상의 최고 득표자), 부회장을 후에 선거 한다.

1. 회장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부회장 :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그 선출 절차는 회장 선출 절차와 같다.
- ④ 추천 : 학급 담임교사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당선자 명단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⑤ 임명 : 선출된 정·부회장에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장을 수여한다.
- ⑥ 정·부회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하며 임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보선 임명하여야 한다. 잔여 임기가 1달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⑦ 1, 2, 3학년 모두 정·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제로 하며, 당해 학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협의)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업 등을 협의·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5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6조(의결) ① 학급회의 의결은 재적 학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학급회장이 결정한다.

- ② 정·부회장, 각 부장이 학급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재적 학생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자격상실) 학급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급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징계 처분(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있어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제 4 절 학 년 회 (특성화고는 전공학과별 자율적으로 구성)

제38조(구성) 학년회는 각 학년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9조(임원) 학년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인(○○부, ○부, ○부, ○부, ○부, ○부, ○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0조(임원의 임무) 학년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년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년회의 시 학년회 의장이 된다.
- ② 학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9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학년회의를 통해 부서의 명칭 및 역할은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각 학년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 ① 후보자격 : 학년회장 - 학급 회장, 학년부회장 - 학급 부회장
- ② 선출 : 해당 학년의 학급회장 및 부회장이 선거권을 가지며, 학급회장 및 부회장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회장을 먼저 선거하고(과반수 이상의 최고 득표자), 부회장을 후에 선거한다.

1. 회장 : 각 학급 회장을 대상으로 투표하며, 재적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부회장 : 각 학급 부회장을 대상으로 투표하며, 재적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추천 : 학급 담임교사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당선자 명단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⑤ 임명 : 선출된 정·부회장에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장을 수여한다.

⑥ 정·부회장으로 임명된 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임자로 보선하여 재임명 할 수 있다. 잔여 임기가 1달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⑦ 1, 2, 3학년 모두 정·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제로 하며, 당해 학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협의)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년의 특색 사업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년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학년부장과 담임교사는 학년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43조(회의) 학년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44조(의결) ① 학년회의 의결은 재적 학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학년회장이 결정한다.

② 정·부회장, 각 부장이 학년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재적 학생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자격상실) 학년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년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징계 처분(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있어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 제정 당시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 회칙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자치 자문위원회 자문 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마련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후, 교칙 제·개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회부한다. 만약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전체 교직원회의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교 학생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7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대의원 중에서 7~9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 관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선거 및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선거일공고) 선거일은 대의원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 7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6조(후보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부회장은 각각 2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 ③ 징계 처분(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있어 교내봉사 3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학생

제7조(투표자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과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간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3.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또는 추천서(붙임 제5-1호 서식) 1부

3. 공약서 1부 (양식 자유)

- ② 제1항 나호의 추천장 또는 추천서는 선거권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각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전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선거규정에 정해진 방법으로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하로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을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을 교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후보자 홍보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게시판이나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 ③ 홍보포스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교칙에 따라 선도처분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와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동토론회 및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 ③ 합동토론회 및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원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 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학생의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대행사에 의뢰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제15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 공고 후,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 후보자 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의 행위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원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6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① 학생회 포스터 제작 비용
- ② 어깨띠 및 피켓 비용
- ③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7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투표 및 개표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붙임 제10호 서식)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18조(개표)

① 위원회는 개표소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붙임 제11-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19조(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각각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 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④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담당교사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당선증(붙임 제15호)을 수여한다.

제20조(재선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③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학년 대의원에서 대의원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제21조(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이 전학,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임학년 학생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학생부회장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4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생자치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담당교사에 이의신청(붙임 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담당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학생자치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5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17조 제1항의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 제정 당시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 회칙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자치 자문위원회 자문 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선거록 및 투표지는 1년간 보관한다.

제4조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마련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후, 교칙 제·개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회부한다. 만약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전체 교직원회의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이 규정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명단 공고

〇〇〇〇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위원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선거명 : 학생회 정·부회장선거
2. 선거관리위원

연번	직책	학번	성명	비고
1	선거관리위원장			3-1반 반장
2	선거관리위원			
3	선거관리위원			
4	선거관리위원			
5	선거관리위원			
6	선거관리위원			
7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및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선거업무기간동안 의문사항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공고

○○○○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선거명 : 학생회 정·부회장선거
- 2. 선거일정
 - 선거공고 :
 - 선거인명부 작성 :
 - 후보자 등록 :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 이후 ~ 선거일
 - 합동 소견 발표회 :
 - 선거일 :
 - 투표장소 :
 - 이의신청기간 :
 - 당선인 결정 및 당선증 수여 :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자 명단 (선거인 명부)

연번	학년/반/번	성명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전입

년 월 일

학년 반 학급자치회

※학급명렬표(출석부)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공약 이행 계획서

- 선거명 :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후보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1. 공약명
 - 가.
 - 나.
- 2. 이행방법
 - 가. 이행방법
 - 나. 이행방법
- 3. 이행기간
 - 가. 이행기간
 - 나. 이행기간
- 4. 예산계획
 - 가. 예산계획
 - 나. 예산계획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에 실시하는 학생회 정·부회장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후보자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선거명 :
- 2. 후보자

	성명	학년/반	비고
기호 1번			
기호 2번			

- 3. 선거일 :
- 4. 선거장소 및 방법 :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사 퇴 서

1. 선 거 명 :
2. 사퇴사유 : 선거운동방식과 운동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정한 선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퇴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에 실시하는 에 사퇴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서명 : (인)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학교 학생회 정·부회장선거 입후보자 사퇴 공고

년 월 일 몇시부로 학생회 정·부회장선거 기호 ○번 후보자 ○○○이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사퇴의사를 밝힌 사퇴서를 제출하여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후보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번 후보자가 사퇴하여 이후 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단일후보로 진행됨을 알립니다. 선거운동 기간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원 등록명부

- 1. 선거명 :
- 2. 후보자명 : 기호 ○번 ○○○
- 3. 선거운동원 명단

연번	성명	학년/반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기호	성명	기표란
기호 1번	●●●	○
기호 2번	□□□	
기호 3번	△△△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관인 등록

1. 선거명 :
2. 투표참관인

연번	성명	학년/반	비고
1			
2			
3			

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제출인 : 후보자 (인)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표참관인 등록

1. 선거명 :
2. 개표참관인

연번	성명	학년/반	비고
1			
2			

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제출인 : 후보자 (인)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표결과 발표

년 월 일에 실시한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1. 선거명 :
- 2. 투표일 :
- 3. 개표결과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기호 1번	○○○		
기호 2번	□□□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및 개표 선거록

1. 투표 및 개표록

투·개표	구분	내용
투표	일시	
	장소	
	시간	
개표	일시	
	장소	

2. 투표 개표 위원(선관위 위원) 현황

직위	성명	투표시간	개표시간
위원장			
위원			

3. 참관인

투·개표	학년/반	성명	비고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4. 투개표현황

- 가. 유효득표수 : 회장 ○○표, 부회장 ○○표
- 나. 무효득표수 : 회장 ○○표, 부회장 ○○표
- 다. 후보자별 득표수
 - 기호 1번
 - 기호 2번

5. 당선인 결정

선거명	당선인/성명	결정근거	득표율	비고
				당선

투표 개표 선거록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확 인 자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년 월 일에 실시한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선인/성명	결정근거	득표율	비고
학생회장				당선
부회장				당선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당 선 증

학년 반 번
성명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실시한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학생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
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서

- 1. 신 청 자 :
- 2. 이의 신청 요약:
- 3. 증빙자료

학생회 선거규정 제○○에 의거하여 ○○○선거에 있어 위와 같이 이의
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학생 시민을 위한 학생자치 안내서

초판발행 : 2019. 12.

재판발행 : 2020. 3.

발 행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032-420-8252

발 행 인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